

【읽기자료 1】

1. 장애인권리협약 최종안

2006 8월 26일 권리협약 8차 특위 채택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 a) 유엔헌장에서 선포한 원리, 즉 전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로서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상기하면서,
- b)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국제 문서를 통해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인정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 c)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 및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하면서,
- c) (bis)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고, 또 장애는, 타인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 d)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상기하면서
- e) 장애인의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조치 등의 장려, 정책형성,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애인관련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 기회 균등화를 위한 기준규칙에 포함된 원리 및 정책 지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 e) (bis)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전략의 필수 요소로서, 장애 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 f)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침해임을 인정하 면서,
- g) 장애인들의 보다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 h)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이 장려되 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 i)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 를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해 있고, 세계 도처에서 그들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 j)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을 인정하면서,
- k)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을 위한 장애인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값진 기 여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완전 참여의 증진은 장애인들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증대, 그리고 인류, 사회 및 경제발전의 중대한 진보와 빈곤 퇴치에 중요한 진척을 가 져올 것임을 강조하면서,
- l)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의 자유는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 을 인정하면서,
- m)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 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 n)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혹은 이견, 국적, 특정인종, 원주민과 그 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출생, 나이 또는 기타 지위 등의 이유로 이중의 또는 가중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염려하면서,
- o) 여성과 소녀 장애인들은 종종 가정 안팎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무시 또는 부주 의한 대우, 구박 또는 학대의 위협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면서,
- p) 장애아동도 다른 비 장애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향 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이행한 의무를 상기하면서
- q)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성

- (性) 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r) 대다수의 장애인이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빈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 s) 무력 충돌 상황과 자연재해 발생이,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국가들에서, 장애의 경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 s) (bis)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존중과 인권협약의 준수에 입각한 평화와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과 외국인 점령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염두 해 두면서,
 - t)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 u) 타인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조약이 인정한 권리를 장려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 v)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여 이들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 y) (bis) 가족은 자연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회 집단이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또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들이 장애인의 완전한 그리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제 1 부

『 제1조 목적 』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든 인권 향유를 명백히 하고, 보호하고 장려하며,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그들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 이와 상호 관련되어있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기관의 손상을 지닌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 정의 』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은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해서, 말하기, 수화, 활자의 표시, 점자, 촉각 의사소통, 확대 프린트,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대중매체, 일상 언어, 낭독자, 그리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양식, 수단, 형식 등을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영역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절한 배려의 거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口語)와 수화 그리고 기타 비구어를 포함한다.

“적절한 배려”는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 과 ” 통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변형 또는 특수한 디자인을 요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디자인,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 과 ” 통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 하지 않는다.

『 제3조 제반 원리들 』

이 협약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 (a)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적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 통합
- (d) 인류 다양성과 인간성의 부분으로서 장애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존중
- (e) 기회균등
- (f) 접근성
- (g) 양성 평등
- (h)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장애아동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 존중

『 제4조 일반적 의무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다음을 약속 한다:
 - (a) 이 협약이 인정한 권리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사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을 채택한다.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입법을 포함한, 현존하는 법률, 규정, 관습, 관례 등을 수정 혹은 폐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의 인권장려와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 (d) 이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공공 기관이 이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e) 타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토록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다음의 연구, 개발, 이용, 그리고 사용을 약속하거나 증진하도록 한다.
 - (i) 장애인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지침과 기준 개발 시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의 개조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 된 보편적 디자인에 의해 설계된 제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들

- (ii) 적절한 가격의 정보통신기술, 이동 보조 기기, 장비들, 보조 공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제반 기술 제공을 우선 순위로 한다.
 - (g) 다른 형태의 지원, 보조 서비스와 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 기기, 장비들 그리고 보조 공학에 대하여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h)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교육훈련을 장려한다.
2. 개별 당사국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본 협약 상에 포함된 의무를 해하지 않고, 이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하면 국제협력체제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개별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과 이행과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대표단체들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는 조항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당사국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현행 협약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률, 협약, 규정, 관습 등에 준거하여 이 협약 당사국이 인정하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훼손이 없어야 한다.
 5. 이 협약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모든 연방국가로 확대되어야 한다.

『 제5조 평등과 차별 금지 』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평등하고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평등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 적절한 배려가 보장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사실상의 평등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치들은, 이 협약의 조건 내에서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6조 장애여성 』

1. 당사국은 장애여성이 다양한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제시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의 향유와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증진 그리고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 장애아동 』

1.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아동의 최대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야한다.
3.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유형과 연령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8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

1.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 (a)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토록 하기 위해서
 - (b) 성별, 연령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 (c) 장애인의 역량과 공헌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서
2.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a) 다음을 위해서 효과적인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
 - (i)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 (iii)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장점,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 장려.

- (b) 낮은 연령 대의 모든 아동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c)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기술힌 하도록 모든 언론기관을 독려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 장려

『 제9조 접근성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타인과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물과 장벽의 식별과 철폐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 (a) 건물, 도로, 교통, 그리고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직장을 포함한 실내·외 시설.
 - (b) 정보, 통신, 그리고 전산/인터넷 서비스와 긴급 상황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과 지침의 개발, 공표와 점검
 - (b)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에게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제공.
 - (d)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시설에 점자 또는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신호제공
 - (e)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원, 낭독사, 전문 수화 통역사 등을 포함한 지원 도우미나 중개자의 배치
 - (f)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의 도움과 지원의 장려
 - (g) 인터넷을 포함한 신규 정보통신 기술과 체계가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려
 - (h) 최소의 비용으로 기술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 장려

제 2 부

『 제10조 생명권 』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생명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 위험 상황 』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상황, 인도적인 위기상황, 자연재해의 발생 등을 포함한, 위험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 법 앞의 평등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당사국은 당사국이 법적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시 장애인이 접근가능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 행사와 연관된 모든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사실상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향유와 관련된 조치들이 사람의 권리, 의지, 그리고 선호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고, 최대한 단시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이 조항에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자신 또는 고유재산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통제하고, 은행대출, 모기지론 그리고 다른 대부형태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재판 접근권 』

1. 당사국은 수사와 예심 단계를 포함한 모든 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상 그리고 연령에 따른 배려를 포함하여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판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판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 교도관들을 포함해서, 사법행정예 중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

『 제14조 인간의 자유와 안전 』

1.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인간의 자유권과 안전권의 향유
 - (b) 부당하게 또는 임의적으로 그들의 자유가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의 박탈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자유가 박탈됐다면, 타인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적절한 배려 조항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제15조 고문이나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1.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누구도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1. 당사국은 가정 안팎에서 성별에 기반 한 관점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사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케어보호사를 위해 착취, 폭력과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 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준비를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에 기초한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보호서비스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에 기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독립적인 당국이 장애인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시설과 이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준비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에 의해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심리학적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이나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존심,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뤄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관련된 특별한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의 사례를 확인, 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초점을 맞춘 입법과 정책들을 포함한, 적절한 입법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 제17조 인간 고결성의 보호 』

모든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결성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이동과 국적의 자유 』

1.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와 국적을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다. 장애인은
 - (a)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하여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적 관련 서류 또는 신원 증명 서류를 획득, 소유,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동의 자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 (c)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라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d)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은 출생 후 등록되어야 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 권리가 있다.

『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

이 협약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향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a) 장애인은 거주지, 거주 장소, 동거인을 타인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특수한 주거 시설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또는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지원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그들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 』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대한 장애인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장애인의 개인적 이동 촉진
- (b) 적절한 가격의 이용을 포함한 장애인의 양질의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공학 및 지원 도우미나 매개체에 대한 용인한 접근
- (c) 장애인 및 이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을 위한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 제공
- (d) 장애인을 위한 모든 측면의 이동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동 보조 기기, 장치 그리고

보조 공학을 생산하는 기관에 대한 격려

『 제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 』

당사국은 수화, 점자 및 대안적인 의사소통 수단과 이들이 선택한 모든 다른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 방법 그리고 형태를 통하여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의 탐구, 수용, 전달의 자유를 포함한, 그들의 표현과 견해의 자유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접근 가능한 형태와 기술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
- (b) 공식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의 수화, 점자 그리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수단,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그리고 형태의 사용을 수용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
- (c) 인터넷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하고 사용가능한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것.
-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들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대중매체에게 권고하는 것.
- (e) 수화사용의 인정과 장려.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1. 거주지나 거주 시설에 상관없이, 어떠한 장애인도 임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왕래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간섭받아서 안 되며, 명예나 명성에 부당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과 재화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1.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혼, 가족, 부모로서의 신분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결혼 적령기에 있는 그리고 배우자의 완전한 동의와 자유의사에 따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 (b) 자신의 자녀수와 터울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나이에 적합한 정보, 출산, 가족계획교육에 접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 이행과 생식력 보존의 공평한 기회의 실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그들의 생식력을 보존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후견인, 피후견인, 피신탁인, 아동의 입양, 또는 국내법에 있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기관과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아동들의 이익은 우선적인 것이다. 당사국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장애아동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장애아동의 은폐, 유기, 방치와 격리를 막기 위해,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서 권능 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와 국내법에 의해서 창설된 사법적인 검토나 다른 행정적인 검토를 제외하고는, 장애 아동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또는 부모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 되서는 안 된다.
 5. 당사국은, 그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 볼 수 없을 때, 친척 중에) 대안 방도를 찾도록 하고, 없을 경우, 그 가족이 속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대체 방안을 찾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24조 교육 』

1.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의 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에서의 통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a)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가치의 완전한 향상과 인권, 기본적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

- (b) 가능한 한 최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개성, 재능과 창의성의 개발
 - (c) 장애인이 자유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
2. 이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들은 장애를 이유로 하여 무상의 의무적인 초·중등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에 접근 할 수 있다.
 - (c) 개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른 적절한 배려.
 - (d) 장애인들은 일반교육체계 내에서 그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 (d) (bis)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조치들은,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교육과 사회개발이 최대화되는 환경 내에서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에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삶과 사회적 개발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점자, 대안적인 필체, 대안적인 의사교환 수단, 방법과 형식, 오리엔테이션과 이동기술을 배우도록 용이하게 하고, 동년배의 지원이나 멘토링을 촉진한다.
 - (b) 수화 학습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언어정체성 확립을 용이하게 한다.
 - (c)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은 가장 적합한 언어 형태, 개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개발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점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와 교육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임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교육훈련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절한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수단, 방법, 형식의 사용, 교수법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타인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제3차 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과 평생 학습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제25조 건강 』

-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없이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건강과 관련된 재할을 포함하여, 건강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 (a) 장애인에게, 성적, 생식적 건강 서비스 그리고 인구에 기초한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및 수준의, 무상 혹은 적절한 가격의, 건강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b)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기 확인과 적절한 개입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재할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c) 이들 건강 관련 재할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서비스의 제공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가깝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d) 건강 전문가에게 공적·사적 의료 관리에 대한 윤리 강령 보급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욕구에 대한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타인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전 지식에 입각한 동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e) 건강보험 규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국내법에 의해서 허용된 생명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f) 장애로 인해서, 건강관리, 건강서비스, 음식 또는 음료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 헤빌리테이션과 재할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

1.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최대한의 독립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그리고 모든 삶의 측면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특히, 건강, 고용, 교육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체적인 재할 서비스를 구성하고, 강화하며, 확대해야 한다.
- (a) 재할 서비스와 재할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개별적인 욕구의 여러 분야에 걸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 (b) 재할 서비스와 재할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해야 하며, 농촌 지역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지역공동체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서 사용가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최초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3. (bis)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이 재활(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유효성, 관련 지식 그리고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 제27조 노동과 고용 』

당사국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노동 시장과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환경에서 자유롭게 장애인 스스로 결정한 일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 동안 장애를 입은 이들을 포함해서, 법률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특히,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할 권리를 실현토록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 (a) 고용 조건, 구직과 고용, 고용의 지속성, 경력관리,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b) 타인과 동등하게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조건과 희롱방지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 (c)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기술적 그리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그리고 직업훈련과 지속적인 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e) 장애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구직, 지속적인 근무와 복직 뿐만 아니라 구직 기회와 경력 관리를 증진하도록 한다.
- (f) 자영업,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한다.
- (g) 공공분야에 장애인이 취업한다.
- (h) 적극적인 우대 조치,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다른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서 민간분야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해야 한다.
- (i) 근무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배려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j)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업무 경험을 습득하도록 증진한다.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일자리 보유 그리고 구직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28조 적절한 삶의 조건과 사회보장 』

1.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조건 개선을 포함한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삶의 수준과 지속적인 삶의 조건 개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에 기초한 차별 없이 사회보장과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음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관련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 기기와 그 외의 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 (b) 장애인들의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빈곤 경감에 대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노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 (c) 빈곤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정부의 장애관련 경비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적인 지원과 보호의무로 부터 휴식을 포함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 (d) 장애인들이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 (e) 장애인이 연금혜택과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 제29조 정치적 그리고 공직생활의 참여 』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와 타인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음을 약속한다.

- (a)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 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공작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특히,
 - (i)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이용 할 수 있는 투표 절차들, 시설 그리고 자료의 보장.
 - (ii) 적절하게 보조기술과 신규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선거와 국민투표 시에 위협 없

이 비밀투표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모든 정부 기관의 공적 기능에 있어서 입후보, 재직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 (iii) 유권자로서의 장애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투표 시 장애인이 요청 할 경우 장애인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투표지원 보장
- (b) 장애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그리고 타인과 동등하게,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공직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i) 정당의 활동과 행정을 포함하여, 국가의 공적, 정치적 삶과 관련된 비정부기구단체의 참여
 - (ii)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 장애를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의 창설과 가입

『 제30조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1.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a) 모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모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그리고 다른 문화적 활동 등의 접근을 향유한다.
 - (c) 가능한 한 극장, 박물관, 영화,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의 접근을 향유하고, 유물과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의 접근을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적 자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적인 정체성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받아야 한다.
5. 장애인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 (b) 장애인이 장애에 특수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타인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자원의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 (c) 장애인이 스포츠 장소, 레크리에이션 장소, 여행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 (d) 장애 아동이 학교체제 내에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레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접근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레저 그리고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 3 부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1.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당사국이 본 협약의 발효를 위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적합한 정보를 수집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자료 보호에 대한 입법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창설된 보호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 (b) 인권, 기본적인 자유와 통계의 윤리적인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채택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2. 이 조항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는 이 협약 하의 당사국 의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며,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직면한 장벽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를 배포할 책임이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32조 국제 협력 』

1. 당사국은 현행 협약의 원리와 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국가간 국가 내에서 적절하게 관련 국제, 지역적 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접근가능 하도록 보장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과 선례의 교류 및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 (c) 연구에서의 협력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성 촉진
 - (d) 적절한 기술이전을 통한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기술에의 접근성과 공유 촉진을 포함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제공
2. 이 조항의 규정은 각 당사국이 협약하의 의무 이행을 해하지 않는다.

『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

1. 당사국은 조직체계에 따라 현행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핵심 부서를 조직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지명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그들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체계를 포함한 당사국 내의 기구를 유지, 강화, 지명 및 설립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단체들은 모니터링의 모든 과정에 완전하게 관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 제34조 장애인권리 위원회 』

1. 이하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창설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현행 협약이 발효 될 시에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60개국이 추가적으로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 할 시 위원회의 위원을 6명까지 증가시켜서, 최대 18명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하고, 높은 도덕적 명망과 이 협약이 포함한 분야

- 에서 인증된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당사국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이 협약 4조 3항에 설명된 조항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4. 형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과 주요 법적 체계, 균형적인 성별 그리고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자국민 가운데 당사국이 지명한 인명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 회의의 정족수는 당사국의 2/3이며, 최대다수표를 얻고 당사국이 출석하여 투표한 대표자의 절대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표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개최 되어야 한다. 각 선거 전 최소 4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2주내로 추천인을 천거토록 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당사국이 추천했다는 것을 표기하고, 모든 추천된 사람들을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이 협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1회 재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 될 6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 6명은 이 조 5항에서 언급한 회의 의장의 예비 뽑기로 정해진다.
8. 그 외의 6명의 위원 선거는 정기 총회에서 본 조항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개최된다.
9.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의 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선언할 시, 위원을 추천한 당사국은 잔여임기 동안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이 조항 관련 규정에서 설명한 요건에 충족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10. 위원회는 고유한 운영규칙을 창설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하의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2. 총회 승인으로 위원회 이 협약에 따라 창설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책임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3.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에 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그리고 면제를 향유한다.

『 35조 당사국 보고서 』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해서 위원회에 이 협약하의 의무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와 이와 관련된 이행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를 관련 당사국을 위해 이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매 4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할 때 마다 후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적절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최초의 총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서는 이 전에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보고서를 준비 할 때, 당사국은 공개된 투명한 절차와, 이 협약 4조 3항에서 설명된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하의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을 지적해야 한다.

『 제36조 보고서의 고려 』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고려할 시 보고서에 대한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고, 이를 관련 당사국에게 전송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기안을 중대하게 초과했다면,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믿을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이 협약 이행을 검토 할 필요성을 통지 할 수 있다.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한다면, 이 조항 1조 규정이 적용 될 것이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4.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대중들이 보고서를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와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 사항에 접근하도록 촉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고려할 시, 보고서에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 또는 지원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당사국 보고서를 위원회 검토 및 권고 의견과 함께, 전문기관, 국제연합 기금과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권능있는 기관에 송부한다.

『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임무 수행 시 위원들을 지원해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위원회는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적 역량강화 방안 및 수단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 제38조 기타 기구와 위원회와의 관계 』

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에 포함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1.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 기구는 그 권한 내에서 이 협약 조항 이행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기구가 관련된 영역에서 협약 이행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시, 이 기구들에게 부탁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 기구의 활동 범위 내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2. 권한 이행 시, 위원회는 보고서 지침, 제안 그리고 일반 권고사항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국제인권조약이 설립한 관련 기구와 상의할 수 있다.

『 제39조 위원회의 보고 』

위원회는 활동 상황에 대해 매 2년 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와 정보 검토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 권고는 당사국이 한 논평과 함께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40조 당사국 회의 』

1. 당사국은 이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당사국회의에서 만나야 한다.
2. 이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추후 회의는 2년에 한 번 국제연합 사무총장이나, 당사국 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된다.

『 제41조 기탁 』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42조 서명 』

이 협약은 [xxxx]를 기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서 모든 국가들과 지역적 통합기구들의 서명을 위해서 개방된다.

『 제43조 구속에 대한 동의 』

이 협약은 서명한 국가의 비준과 서명한 지역적 통합 기구의 공식적인 확인에 의해서 비준된다.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적 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해서 개방된다.

『 제44조 지역적통합기구 』

1. '지역적통합기구' 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권한을 위임한 해당 지역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 기구는 공식적인 확인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과 관련된 이구의 권한을 선언 할 수 있다. 그 후, 이 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수반되는 변경사항을 기탁처에 통보 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당사국' 이라는 용어는 권한 내에서 이 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
3. 45조 1항, 47조 2항과 3항의 목적을 위해 지역적 통합기구에 기탁된 문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4. 그 권한과 관련하여, 지역적 통합기구는 당사국 회의에서 이 기구내의 당사국 수의 동등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기구 회원국가중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 할 시, 이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제45조 발효 』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나 지역적 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 제46조 유보 』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 할 수 있다.

『 제47조 개정 』

1. 어떤 국가도 개정을 제안 할 수 있고,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즉시,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개정안을 회람토록 해야 하며, 당사국은 개정안의 고려와 투표를 위한 당사국 회의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 회람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1/3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의 대다수가 참석하고 투표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다.
2. 47조 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 후 당사국 2/3 가 기탁서를 수락 한 후 13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후, 개정안은 수락서 기탁 후 13일 이후에 당사국에 발효된다. 개정안은 개정을 수락 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3. 당사국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된다면, 34조, 38조, 39조 40조는 배제된 채 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 시 당사국의 3분의 2가 수락서를 제출 한 후 13일 이내에 발효된다.

『 제48조 폐기 』

당사국은 서면통보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서를 받은 후 1년 후에 발효된다.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태 』

이 협약의 문서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제50조 정본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이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을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 장애인 권리협약을 전체가 돌아가며 소리 높여 낭독해 봅시다.

2. 위 조항 중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심장하다고 느낀 조항 세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lank box for student response to question 2.

【활동자료 1】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국민의 기본권 조항 *

ㄴ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토오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
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위 조항 중에서 이미 실현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 5개 조항과 아직 실현이 멀어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조항 5개 조항을 골라보자.

이미 실현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 5개 조항

아직 실현이 멀어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5개 조항

【활동자료 1】

*** 우리시설 인권 실천 약속 10개항 ***

- 우리시설에서 꼭 지켜졌으면 하는 인권실천약속을 10개항으로 간단히 적어 게시하여 보자.

1.
2.
3.
4.
5.
6.
7.
8.
9.
10.

10 인권 씨앗 심기

- ▷ 인권영역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핵심주제 : 사람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동체의식 함양

□ 프로그램 목표

- 법과 제도를 넘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인권이 가장 잘 보호되는 것임을 이해한다.
- 인권에도 윈윈(win-win)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이해한다.
- 인권은 내 앞의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맞추어 나가는 것임을 깨닫는다.

교육개요

□ 프로그램 개요

모둠유무	유 (6인 1모둠)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활동자료 1, 2〉, 음악 CD player		

□ 수행방법 및 역할

프로그램 내용	수행 방법	진행자 역할	참여자 역할
1. 인권씨앗 만들기	- 개인별로 인권씨앗에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대해 적는다.	씨앗모양을 미리 오려서 준비한다.	
2. 인권 싹틔우기	-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적는다.		

□ 진행시 유의사항

- 이번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흔히 잘못을 범하기 쉬운 우리의 일상적 사고를 점검해 보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음악 등을 활용하여 진지한 명상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지막 시간이므로 자유롭게 전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진행 시나리오

순서	시간	진행 멘트	비고
도입	5분	- 모둠별 자리배치 및 프로그램 소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총정리하는 의미로 진행하겠습니다.	
활동1	15분	-<활동> 인권씨앗 만들기 활동지 1에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에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의 모습을 적어주세요.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씩 적어주세요. 다 완성하셨으면 한분씩 차례로 나와서 씨앗에 무얼 쓰셨는지 보여주시고 큰 전지에 붙여주세요.	
활동2	20분	-<활동> 인권 키우기 여러분의 씨앗이 여기 부러졌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물, 햇빛, 양분을 줘야겠지요. 이제 활동지에 여러분의 싹을 틔우게 하기 위한 양분을 적어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 완성하셨으면 한분씩 차례로 나와서 씨앗에 무얼 쓰셨는지 보여주시고 큰 전지에 붙여주세요.	
마무리	10분	<활동 정리> 오늘 우리의 인권씨앗이 부러졌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신 이 양분들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활동자료 1】

* 인권 씨앗 만들기 *



인권관련 국내·외 인권규정

장애인 인권관련 국내·외 인권규정

1. 장애인권리협약 최종안

2006 8월 26일 권리협약 8차 특위 채택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 a) 유엔헌장에서 선포한 원리, 즉 전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로서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상기하면서,
- b)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국제 문서를 통해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인정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 c)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 및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하면서,
- c) (bis)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고, 또 장애는, 타인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 d)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면서
- e) 장애인의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 계획, 프로그램, 조치 등의 장려, 정책형성,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애인관련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 기회 균등화를 위한 기준규칙에 포함된 원리 및 정책 지침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 e) (bis)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전략의 필수 요소로서, 장애 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f)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침해임을 인정하면서,
 - g) 장애인들의 보다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 h)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이 장려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 i)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해 있고, 세계 도처에서 그들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 j)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 k)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을 위한 장애인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값진 기여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완전 참여의 증진은 장애인들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증대, 그리고 인류, 사회 및 경제발전의 증대한 진보와 빈곤 퇴치에 중요한 진척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면서,
 - l)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의 자유는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 m)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 n)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혹은 이견, 국적, 특정인종, 원주민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 출생, 나이 또는 기타 지위 등의 이유로 이중의 또는 가중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염려하면서,
 - o) 여성과 소녀 장애인들은 종종 가정 안팎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무시 또는 부주의한 대우, 구박 또는 학대의 위협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면서,
 - p) 장애아동도 다른 비 장애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향

- 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이행한 의무를 상기하면서
- q)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성(性) 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r) 대다수의 장애인이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빈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 s) 무력 충돌 상황과 자연재해 발생이,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생 국가들에서, 장애의 경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 s) (bis)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존중과 인권협약의 준수에 입각한 평화와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과 외국인 점령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염두 해 두면서,
 - t)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 u) 타인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조약이 인정한 권리를 장려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 v)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의 근본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여 이들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 v) (bis) 가족은 자연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회 집단이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또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들이 장애인의 완전한 그리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제 1 부

『 제1조 목적 』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든 인권 향유를 명백히 하고, 보호하고 장려하며,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그들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 이와 상호 관련되어있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기관의 손상을 지닌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 정의 』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은 접근 가능한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해서, 말하기, 수화, 활자의 표시, 점자, 촉각 의사소통, 확대 프린트,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대중매체, 일상 언어, 낭독자, 그리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양식, 수단, 형식 등을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영역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저해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절한 배려의 거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口語)와 수화 그리고 기타 비구어를 포함한다.

“적절한 배려”는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과 “통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변형 또는 특수한 디자인을 요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디자인,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과 “통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은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배제 하지 않는다.

『 제3조 제반 원리들 』

이 협약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 (a)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적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 통합
- (d) 인류 다양성과 인간성의 부분으로서 장애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존중
- (e) 기회균등
- (f) 접근성
- (g) 양성 평등
- (h)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장애아동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 존중

『 제4조 일반적 의무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다음을 약속 한다:
 - (a) 이 협약이 인정한 권리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사법적, 행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을 채택한다.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입법을 포함한, 현존하는 법률, 규정, 관습, 관례 등을 수정 혹은 폐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의 인권장려와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 (d) 이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나 실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 당국 공공 기관이 이 협약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e) 타인, 단체 또는 민간 기업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토록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다음의 연구, 개발, 이용, 그리고 사용을 약속하거나 증진하도록 한다.
 - (i) 장애인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지침과 기준 개발 시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의 개조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 된 보편적 디자인에 의해 설계된 제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들
 - (ii) 적절한 가격의 정보통신기술, 이동 보조 기기, 장비들, 보조 공학을 포함한 장애인에

게 적합한 새로운 제반 기술 제공을 우선 순위로 한다.

- (g) 다른 형태의 지원, 보조 서비스와 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기술을 포함하여, 이동보조 기기, 장비들 그리고 보조 공학에 대하여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h)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교육훈련을 장려한다.

2. 개별 당사국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본 협약 상에 포함된 의무를 해하지 않고, 이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하면 국제협력체제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개별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과 이행과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대표단체들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도움이 되는 조항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당사국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현행 협약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률, 협약, 규정, 관습 등에 준거하여 이 협약 당사국이 인정하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훼손이 없어야 한다.
5. 이 협약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모든 연방국가로 확대되어야 한다.

『 제5조 평등과 차별 금지 』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평등하고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평등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 적절한 배려가 보장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사실상의 평등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치들은, 이 협약의 조건 내에서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6조 장애여성 』

1. 당사국은 장애여성이 다양한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제시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의 향유와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증진 그리고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 장애아동 』

1.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아동의 최대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유형과 연령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8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

1.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 (a)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토록 하기 위해서
 - (b) 성별, 연령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 (c) 장애인의 역량과 공헌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서
2.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 (a) 다음을 위해서 효과적인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
 - (i)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 (iii)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장점,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 장려.

- (b) 낮은 연령 대의 모든 아동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c)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기술 하도록 모든 언론기관을 독려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 장려

『 제9조 접근성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타인과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물과 장벽의 식별과 철폐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 (a) 건물, 도로, 교통, 그리고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직장을 포함한 실내·외 시설.
 - (b) 정보, 통신, 그리고 전산/인터넷 서비스와 긴급 상황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과 지침의 개발, 공표와 점검
 - (b) 대중에게 개방되고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에게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제공.
 - (d)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시설에 점자 또는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신호제공
 - (e)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원, 낭독사, 전문 수화 통역사 등을 포함한 지원 도우미나 중개자의 배치
 - (f)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의 도움과 지원의 장려
 - (g) 인터넷을 포함한 신규 정보통신 기술과 체계가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려
 - (h) 최소의 비용으로 기술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 장려

제 2 부

『 제10조 생명권 』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생명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 위험 상황 』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상황, 인도적인 위기상황, 자연재해의 발생 등을 포함한, 위험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 법 앞의 평등 』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당사국은 당사국이 법적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시 장애인이 접근가능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 행사와 연관된 모든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사실상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향유와 관련된 조치들이 사람의 권리, 의지, 그리고 선호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고, 최대한 단시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이 조항에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자신 또는 고유재산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통제하고, 은행대출, 모기지론 그리고 다른 대부형태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재판 접근권 』

1. 당사국은 수사와 예심 단계를 포함한 모든 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상 그리고 연령에 따른 배려를 포함하여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판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판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 교도관들을 포함해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

『 제14조 인간의 자유와 안전 』

1.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인간의 자유권과 안전권의 향유
 - (b) 부당하게 또는 임의적으로 그들의 자유가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로 자유의 박탈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자유가 박탈됐다면, 타인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적절한 배려 조항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제15조 』

고문이나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누구도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1. 당사국은 가정 안팎에서 성별에 기반 한 관점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그리

- 고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사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케어보호사를 위해 착취, 폭력과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 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준비를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에 기초한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보호서비스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에 기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독립적인 당국이 장애인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시설과 이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준비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에 의해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심리학적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이나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존심,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뤄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관련된 특별한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그리고 학대의 사례를 확인, 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초점을 맞춘 입법과 정책들을 포함한, 적절한 입법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 제17조 인간 고결성의 보호 』

모든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결성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이동과 국적의 자유 』

1.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와 거주지와 국적을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다. 장애인은
 - (a) 국적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가지며, 장애를 이유로 하여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b)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적 관련 서류 또는 신원 증명 서류를 획득, 소유,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동의 자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 (c)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라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d)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은 출생 후 등록되어야 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 권리가 있다.

『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

이 협약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향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a) 장애인은 거주지, 거주 장소, 동거인을 타인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특수한 주거 시설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또는 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지원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그들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 』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최대한 장애인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가격으로 장애인의 개인적 이동 촉진
- (b) 적절한 가격의 이용을 포함한 장애인의 양질의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공학 및 지원 도우미나 매개체에 대한 용인한 접근
- (c) 장애인 및 이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을 위한 이동 기술에 대한 훈련 제공
- (d) 장애인을 위한 모든 측면의 이동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동 보조 기기, 장치 그리고 보조 공학을 생산하는 기관에 대한 격려

『 제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 』

당사국은 수화, 점자 및 대안적인 의사소통 수단과 이들이 선택한 모든 다른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 방법 그리고 형태를 통하여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의 탐구, 수용, 전달의 자유를 포함한, 그들의 표현과 견해의 자유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접근 가능한 형태와 기술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
- (b) 공식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의 수화, 점자 그리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수단,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그리고 형태의 사용을 수용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
- (c) 인터넷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하고 사용가능한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것.
-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들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대중매체에게 권고하는 것.
- (e) 수화사용의 인정과 장려.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

- 1. 거주지나 거주 시설에 상관없이, 어떠한 장애인도 임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왕래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간섭받아서 안 되며, 명예나 명성에 부당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과 재화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 1.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혼, 가족, 부모로서의 신분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결혼 적령기에 있는 그리고 배우자의 완전한 동의와 자유의사에 따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 (b) 자신의 자녀수와 터울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나이에 적합한 정보, 출산, 가족계획교육에 접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 이행과 생식력 보존의 공평한 기회의 실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그들의 생식력을 보존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후견인, 피후견인, 피신탁인, 아동의 입양, 또는 국내법에 있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기관과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아동들의 이익은 우선적인 것이다. 당사국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장애아동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장애아동의 은폐, 유기, 방치와 격리를 막기 위해,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서 권능 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와 국내법에 의해서 창설된 사법적인 검토나 다른 행정적인 검토를 제외하고는, 장애 아동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또는 부모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 되서는 안 된다.
 5. 당사국은, 그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 볼 수 없을 때, 친척 중에) 대안 방도를 찾도록 하고, 없을 경우, 그 가족이 속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대체 방안을 찾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24조 교육 』

1.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단계의 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에서의 통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a)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가치의 완전한 향상과 인권, 기본적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
 - (b) 가능한 한 최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개성, 재능과 창의성의 개발
 - (c) 장애인이 자유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

2. 이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a)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들은 장애를 이유로 하여 무상의 의무적인 초·중등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은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에 접근 할 수 있다.
 - (c) 개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른 적절한 배려.
 - (d) 장애인들은 일반교육체계 내에서 그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 (d) (bis)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조치들은,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교육과 사회개발이 최대화되는 환경 내에서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에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삶과 사회적 개발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점자, 대안적인 필체, 대안적인 의사교환 수단, 방법과 형식, 오리엔테이션과 이동기술을 배우도록 용이하게 하고, 동년배의 지원이나 멘토링을 촉진한다.
 - (b) 수화 학습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언어정체성 확립을 용이하게 한다.
 - (c)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은 가장 적합한 언어 형태, 개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교육적이며 사회적인 개발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점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와 교육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임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교육훈련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절한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수단, 방법, 형식의 사용, 교수법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타인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제3차 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과 평생 학습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제25조 건강 』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없이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건강과 관련된 재활을 포함하여, 건강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 (a) 장애인에게, 성적, 생식적 건강 서비스 그리고 인구에 기초한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및 수준의, 무상 혹은 적절한 가격의, 건강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b)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기 확인과 적절한 개입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c) 이들 건강 관련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서비스의 제공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가깝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d) 건강 전문가에게 공적·사적 의료 관리에 대한 윤리 강령 보급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욕구에 대한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타인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전 지식에 입각한 동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e) 건강보험 규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국내법에 의해서 허용된 생명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f) 장애로 인해서, 건강관리, 건강서비스, 음식 또는 음료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 헤빌리테이션과 재활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

1.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최대한의 독립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그리고 모든 삶의 측면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은 특히, 건강, 고용, 교육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체적인 재활 서비스를 구성하고, 강화하며, 확대해야 한다.
 - (a) 재활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개별적인 욕구의 여러 분야에 걸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 (b) 재활 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해야 하며, 농촌 지역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지역공동체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사용가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최초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3. (bis)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이 재활(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유효성, 관련 지식 그리고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 제27조 노동과 고용 』

당사국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노동 시장과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환경에서 자유롭게 장애인 스스로 결정한 일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 동안 장애를 입은 이들을 포함해서, 법률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특히,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할 권리를 실현토록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 (a) 고용 조건, 구직과 고용, 고용의 지속성, 경력관리,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b) 타인과 동등하게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조건과 희롱방지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 (c) 타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기술적 그리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그리고 직업훈련과 지속적인 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 (e) 장애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구직, 지속적인 근무와 복직 뿐만 아니라 구직 기회와 경력 관리를 증진하도록 한다.
 - (f) 자영업, 기업이 정신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한다.
 - (g) 공공분야에 장애인이 취업한다.
 - (h) 적극적인 우대 조치,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다른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서 민간분야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해야 한다.
 - (i) 근무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배려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j)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업무 경험을 습득하도록 증진한다.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일자리 보유 그리고 구직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28조 적절한 삶의 조건과 사회보장 』

1.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조건 개선을 포함한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삶의 수준과 지속적인 삶의 조건 개선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에 기초한 차별 없이 사회보장과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음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관련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 기기와 그 외의 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 (b) 장애인들의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빈곤 경감에 대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과 노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 (c) 빈곤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정부의 장애관련 경비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적인 지원과 보호의무로부터 휴식을 포함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 (d) 장애인들이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 (e) 장애인이 연금혜택과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 제29조 정치적 그리고 공직생활의 참여 』

-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와 타인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음을 약속한다.
- (a)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 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공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특히,
 - (i)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이용 할 수 있는 투표 절차들, 시설 그리고 자료의 보장.
 - (ii) 적절하게 보조기술과 신규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선거와 국민투표 시에 위협 없이 비밀투표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모든 정부 기관의 공적 기능에 있어서 입후보, 재직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
 - (iii) 유권자로서의 장애인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 경우, 투표 시 장애인이 요청 할 경우 장애인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투표지원 보장
- (b) 장애인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그리고 타인과 동등하게,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증진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공직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i) 정당의 활동과 행정을 포함하여, 국가의 공적, 정치적 삶과 관련된 비정부기구단체의 참여
 - (ii)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 장애를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의 창설과 가입

『 제30조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1. 당사국은 타인과 동등하게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a) 모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 (b) 모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그리고 다른 문화적 활동 등의 접근을 향유한다.
 - (c) 가능한 한 극장, 박물관, 영화, 도서관과 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의 접근을 향유하고, 유물과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의 접근을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적 자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장벽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타인과 동등하게 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적인 정체성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받아야 한다.
5. 장애인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모든 수준에서 장애인이 주류 스포츠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 (b) 장애인이 장애에 특수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참여할 기

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타인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자원의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 (c) 장애인이 스포츠 장소, 레크리에이션 장소, 여행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 (d) 장애 아동이 학교체계에 내에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레저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접근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여행, 레저 그리고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제 3 부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1.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당사국이 본 협약의 발효를 위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적합한 정보를 수집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자료 보호에 대한 입법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창설된 보호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 (b) 인권, 기본적인 자유와 통계의 윤리적인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채택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2. 이 조항에 따라서 수집된 정보는 이 협약 하의 당사국 의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직면한 장벽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를 배포할 책임이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32조 국제 협력 』

1. 당사국은 현행 협약의 원리와 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국가간 국가 내에서 적절하게 관련 국제, 지역적 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접근가능 하도록 보장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과 선례의 교류 및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 (c) 연구에서의 협력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성 촉진
 - (d) 적절한 기술이전을 통한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기술에의 접근성과 공유 촉진을 포함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 제공
2. 이 조항의 규정은 각 당사국이 협약하의 의무 이행을 해하지 않는다.

『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

1. 당사국은 조직체계에 따라 현행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 내 핵심 부서를 조직하고, 다양한 분야 및 수준에서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지명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그들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체계를 포함한 당사국 내의 기구를 유지, 강화, 지명 및 설립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단체들은 모니터링의 모든 과정에 완전하게 관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 제34조 장애인권리 위원회 』

1. 이하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창설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현행 협약이 발효 될 시에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60개국이 추가적으로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 할 시 위원회의 위원을 6명까지 증가시켜서, 최대 18명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하고, 높은 도덕적 명망과 이 협약이 포함된 분야에서 인증된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당사국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이 협약 4조 3항에 설명된 조항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4. 형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과 주요 법적 체계, 균형적인 성별 그리고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자국민 가운데 당사국이 지명한 인명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 회의의 정족수는 당사국의 2/3이며, 최다다수표를 얻고 당사국이 출석하여 투표한 대표자의 절대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표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개최 되어야 한다. 각 선거 전 최소 4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2주내로 추천인을 천거토록 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당사국이 추천했다는 것을 표기하고, 모든 추천된 사람들을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이 협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1회 재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 될 6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 6명은 이 조 5항에서 언급한 회의 의장의 예비뽑기로 정해진다.
8. 그 외의 6명의 위원 선거는 정기 총회에서 본 조항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개최된다.
9.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의 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선언할 시, 위원을 추천한 당사국은 잔여임기 동안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이 조항 관련 규정에서 설명한 요건에 충족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10. 위원회는 고유한 운영규칙을 창설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하의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2. 총회 승인으로 위원회 이 협약에 따라 창설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책임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3.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특권과 면제에 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그리고 면제를 향유한다.

『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해서 위원회에 이 협약하의 의무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와 이와 관련된 이행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를 관련 당사국을 위해 이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매 4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할 때 마다 후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적절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최초의 총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서는 이 전에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보고서를 준비 할 때, 당사국은 공개된 투명한 절차와, 이 협약 4조 3항에서 설명된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하의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을 지적해야 한다.

『 제36조 보고서의 고려 』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고려할 시 보고서에 대한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고, 이를 관련 당사국에게 전송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 제출 기안을 중대하게 초과했다면, 위원회는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믿을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이 협약 이행을 검토 할 필요성을 통지 할 수 있다.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한다면, 이 조항 1조 규정이 적용 될 것이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4.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대중들이 보고서를 쉽게 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와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 사항에 접근하도록 촉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고려할 시, 보고서에 포함된 전문적인 의견 또는 지원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당사국 보고서를 위원회 검토 및 권고 의견과 함께, 전문기관, 국제연합 기금과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권능있는 기관에 송부한다.

『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임무 수행 시 위원들을 지원해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위원회는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적 역량강화 방안 및 수단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 제38조 기타 기구와 위원회와의 관계 』

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에 포함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1.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 기구는 그 권한 내에서 이 협약 조항 이행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기구가 관련된 영역에서 협약 이행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시, 이 기구들에게 부탁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 기구의 활동 범위 내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2. 권한 이행 시, 위원회는 보고서 지침, 제안 그리고 일반 권고사항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국제인권조약이 설립한 관련 기구와 상의할 수 있다.

『 제39조 위원회의 보고 』

위원회는 활동 상황에 대해 매 2년 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와 정보 검토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 권고는 당사국이 한 논평과 함께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40조 당사국 회의 』

1. 당사국은 이 협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당사국회의에서 만나야 한다.
2. 이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추후 회의는 2년에 한 번 국제연합 사무총장이나, 당사국 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된다.

『 제41조 기탁 』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42조 서명 』

이 협약은 [xxxx]를 기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서 모든 국가들과 지역적 통합기구들의 서명을 위해서 개방된다.

『 제43조 구속에 대한 동의 』

이 협약은 서명한 국가의 비준과 서명한 지역적 통합 기구의 공식적인 확인에 의해서 비준된다.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적 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해서 개방된다.

『 제44조 지역적통합기구 』

1. '지역적통합기구' 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권한을 위임한 해당 지역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 기구는 공식적인 확인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이구의 권한을 선언 할 수 있다. 그 후, 이 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수반되는 변경사항을 기탁처에 통보 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당사국' 이라는 용어는 권한 내에서 이 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
3. 45조 1항, 47조 2항과 3항의 목적을 위해 지역적 통합기구에 기탁된 문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4. 그 권한과 관련하여, 지역적 통합기구는 당사국 회의에서 이 기구내의 당사국 수의 동등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기구 회원국가중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 할 시, 이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제45조 발효 』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나 지역적 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 제46조 유보 』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후보는 언제라도 철회 할 수 있다.

『 제47조 개정 』

- 어떤 국가도 개정을 제안 할 수 있고,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즉시,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개정안을 회람토록 해야 하며, 당사국은 개정안의 고려와 투표를 위한 당사국 회의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 회람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1/3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의 대다수가 참석하고 투표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다.
- 47조 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 후 당사국 2/3 가 기탁서를 수락 한 후 13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후, 개정안은 수락서 기탁 후 13일 이후에 당사국에 발효된다. 개정안은 개정을 수락 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당사국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된다면, 34조, 38조, 39조 40조는 배제된 채 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 시 당사국의 3분의 2가 수락서를 제출 한 후 13일 이내에 발효된다.

『 제48조 폐기 』

당사국은 서면통보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서를 받은 후 1년 후에 발효된다.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태 』

이 협약의 문서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제50조 정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본이 동등하게 이 협약의 정보이다. 이상을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원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 인권선언

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1. '장애인'이라 함은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언어·종교·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빈부·출생·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먼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지적장애인의 권리 선언'의 제7조는 지적장애인의 이와 같은 제권리의 어떠한 제한 또는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심리학적 및 기능적 치료 또는 의학적·사회적 재활교육·직업교육·훈련재활·원조·고정상담·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의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장애인은 경제·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갖는다.
9. 장애인은 그 가족이나 또는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창조적 활동·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은 그 거주에 관하는 한에서 그 상태로 인하여 필요하던가 또는 그 상태에 유래해서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외는 차별적인 취급을

면한다. 만일 장애인이 전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에서의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동년배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모욕적 또는 비열한 성질을 가진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격한 법적 원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13.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충분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4. 세계인권선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 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정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

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지적장애인 인권교육전문가 1차 양성교육 교재

발행처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발행인	배연창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전화	(02) 592-5023
팩스	(02) 592-5026
발행일	2008. 7.
홈페이지	www.kaidd.or.kr
